

등록번호	행정관리국-143
등록일자	2015.8.4.
결재일자	2015.8.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	부구청장	구청장
김정희	박해선	박희균	황치영	08/05 최창식
합	박진석 총무과장	김종석		
조	유용열 자치행정과장	권철희		
	이진형 기획예산과장	권순우		
	백기운 복지지원과장	조충현		
	홍해정 예산팀장	김영혜		
	강원기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



쾌적한 안전도시 추진단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



주민 안전 최우선을 기반으로 한 주민 불편사항 및 도시환경 저해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 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구청장 지시사항(2015.6.15.) 『깨끗한 동네 만들기 특별정비반 구성』
 - 쓰레기, 무단적치물, 더러운 셔터, 건물외벽 정비 등 보행안전 확보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과, 주차관리과, 건축과 등을 포함해 우선 특별정비반을 구성하고 시범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 구청장 방침(2015.6.30.) 『밝은 마을 조성 추진단 구성·운영』

II 현황 및 문제점

- 개인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이웃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범질서 미확립으로 보행안전 및 주거환경 저해
 - 보도 상 불법 점유시설물,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개인 편리로 인하여 보행안전 및 주거환경 저해
-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치 않은 부서별 분산된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정비사업 효과 저조
 - 가로시설(가로점용), 건축, 녹지, 교통 등 각 분야별로 분산된 정비 및 상호 업무협조 미흡으로 지속가능한 정비사업 효과 저조
- 불법 간판, 주정차, 거리가게 등 관 주도의 단속과 규제 위주 정비로 주민 반발 야기 및 사업성과 미흡

III 추진방향

- 주민 안전 최우선을 기반으로 한 주민 불편사항 및 도시환경 저해 요인들에 대한 통합관리로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사업 추진
-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로 우리 마을을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인 계도와 설득으로 자율정비 체계 구축
-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권역별·골목별로 통반장·직능단체·건물주(점포주)를 활용한 책임담당구역제 운영
-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시범동 우선 선정 및 집중 환경개선으로 환경 수준 정확단계에 다음 동으로 이동 정비추진

IV 정비대상

- 고정적 정비대상
 - 도로시설물, 빗물받이·맨홀, 불법간판(지주간판, 돌출간판 등), 교통시설물(교통안전표지판, 쉼스, 블라드 등), 공원시설물, 가로수 및 녹지대, 점포앞 적치물, 가로등 전신주 침지류 잔해, 더러운 셔터·어닝·건물외벽 등
- 유동적 정비대상
 - 불법간판(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불법 주정차, 무단 쓰레기, 노점상 등

V 특별정비반 편성 운영계획

- 정비방향 : 계도·경고 등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불응시 분야별 합동 강제정비
- 조직도 : 행정관리국장 직속 특별정비반 편성 집중운영



□ 분야별 주요임무

구분	분야별 주요임무	추진부서
총괄	·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총괄 - 기본 정비대상 물량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등 · 시범동 정비대상 모니터링(일일 순찰결과 통보) · 정비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등	밖은 마을 조성 추진단 감사담당관 다산동 주민센터
가로시설분야	· 도로시설 실태조사 및 불량시설물 유지보수 · 보행지장시설물 전수조사 및 통폐합 추진 - 가로등, CCTV, 안내간판, 교통시설물, 쉼스 등 보행지장시설물 일제조사 및 통폐합 추진 · 한전, 통신주 등 지중화 협의추진 등	도로시설과 전산정보과
건축분야	· 건축공사장 주변 자체적치물, 보행장애물 등 · 불법 가설건축물 정비(천막 증축 업소 운영 등)	건축과 도심재생과 주택과
녹지분야	· 공원시설물, 가로수, 띠녹지로 인한 보도 파손과 보행불편 구간 일제조사 및 정비 · 가로수분 파손·망실구간 및 방치된 고사목 정비 - 보행불편을 주는 가로수분 파손, 망실과 고사목 일제정비 ·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땅 조사	공원녹지과
가로점용분야	· 보행로상 거리가게와 무단적치물 조사 및 정비 - 보행 지장을 주는 가로판매대, 거리가게 등 위치 이동 등 정비 · 차량진출입로 파손구간 일제조사 및 정비 - 차량진출입로 파손구간 원인자 원상복구 명령 · 불법 간판 일제조사 및 정비 - 불법 지주간판, 돌출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정비 - 가로등 전신주 등 불법 침지류 방지판 설치 등	가로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교통시설분야	· 노후, 파손된 교통시설물 정비 · 자전거거치대, 버스정류장 등 보행 불편 여부 조사 및 정비 · 보도내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블라드 설치 · 보도 위 주행 지게차, 오토바이 등 단속 및 계도 · 보도 위 불법주정차 및 상습 주정차 지역 집중단속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환경분야	· 무단투기 단속 및 취약지역·시설물 물청소 · 가로휴지통, 의류수거함 등 관리 · 하수관로, 빗물받이 파손, 정화조 등 악취관리 · 가로등 전주 및 건물외벽 불법 침지류 부착 잔해 제거 · 더러운 셔터, 건물외벽 등 부식 부분 도색	청소행정과 환경과 안전치수과 다산동 주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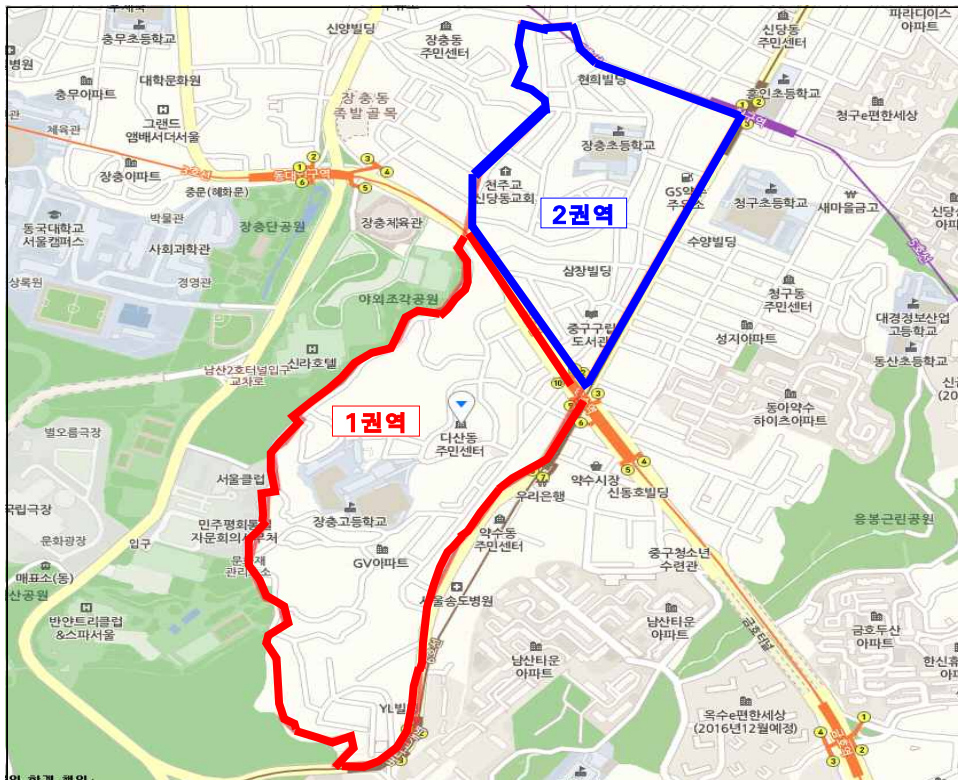
※ 불법 침지류 제거 및 도색 분야 일부 복지지원과(자원봉사자) 연계 활용

VI 시범동(다산동) 쾌적한 안전도시 조성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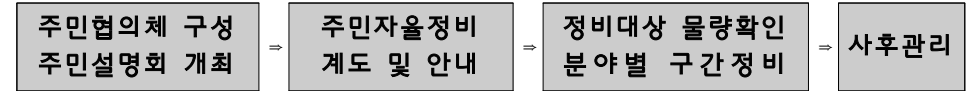
성곽 예술문화거리 조성 사업 및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구간을 포함하여 주택·상가 건물이 혼재되어 있으며 약수역 및 버티고개역을 중심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들의 이용이 높은 다산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 정비구간 : 다산동 전지역을 2개 권역으로 구분 정비

구 분	정 비 구 간
1권역 (약수역~버티고개역)	· 동호로 11길(약수역 선일빌딩~나눔의교회) 중점구간 중심으로, - 이면도로 5개구간 등 1권역 전체
2권역 (약수역~청구역)	· 동호로 12길(청구역~약수역 1번출구) 중점구간 중심으로, - 이면도로 13개구간 등 2권역 전체



□ 정비절차 및 세부추진내역



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 주민협의체 구성 >

- 구성인원 : 20명 내외
 -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각 직능단체장, 건물주(점포주) 10여명 등
- 역할
 - 통반장, 직능단체 등 구간별 책임담당제 지정 운영 방안 검토
 - 주민 불편사항 의견 수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
 - 주민협의체 자율협약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 주민설명회 개최 > ⇨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주민참여 협조 및 설득

- (1차)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한 사업취지 설명
 - 사업취지 설명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비방안 모색
- (2차) 동 전체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 사업취지 설명 및 해당 건물주(점포주) 의견 적극 수렴
- (3차) 각 정비구간별 소규모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청취
 - 사업취지 설명 및 주민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 각 직능단체별 회의 참석하여 사업취지 설명

< 구간별 책임담당제 실시 >

- 대 상 : 통반장, 직능단체, 건물주(점포주) 등 구간별 책임담당제 지정
- 내 용
 - 특별정비반과 함께 자율정비 제도 참여
 - 정비대상 발생시 현장 제도 책임 및 특별정비반 신고 등

② 주민자율정비 제도 및 안내 ⇨ 주민참여 적극 유도

- 동장은 특별정비반 투입전에도 안내문, 경고문 등 반복적으로 제도, 관리
- 정비구간 전체 점포 및 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 정비대상 제도, 경고 스티커 부착 등 반복적으로 자율정비 참여 적극 유도
- 주민협의체, 특별정비반 등 교육, 간담회 실시 등으로 정비계획 공유

- 주민협의체, 특별정비반 등 해당 점포 및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취지 설명, 자율정비 안내 등 민원사항 의견수렴
- 주민 스스로 정비하도록 각 정비구간별 소규모 현장 설명 수시 개최 및 독려

③ 분야별 정비대상 물량조사 및 정비방법

< 정비대상 물량조사 >

- 내 용 : 도로 상 상품진열 등 노상적치물 및 무단투기 상습지역, 더러운 셔터·건물외벽, 천막훼손, 불법 입간판 등 환경을 해치는 요소 등
- 조사방법 : 실무자 회의개최 및 현장 합동점검 실시
 - (고정적 정비물량 조사) 추진단에서 기본 정비대상 물량 조사 후 해당 부서 현장 업무협의를 통하여 정비대상 물량 최종 확정
 - (유동적 정비물량 조사) 무단쓰레기·불법주정차 등 유동적인 정비대상은 감사담당관 순찰팀, 해당 동장,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팀의 1일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시 정비대상 파악

< 정비구간 정비방법 > ⇨ 주민참여 자율정비 불응시 합동 강제정비

- 정비대상 : 동 전지역을 2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분야별로 정비
- 정비내용 및 정비방법 : 1권역 정비 후, 2권역 정비 실시
 - 정비구간별 정비대상 정비여부 등 총괄 현황 작성 관리
 - 장기간 소요되는 정비사항 계속추진 관리

구 분	정 비 방 법
주민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도로시설분야, 녹지분야 등 주민 스스로 할 수 없는 정비 대상은 해당 부서를 통하여 정비 조치 • (2차) 재발생 부분 특별정비반 신고 등 사후관리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불법간판 설치, 무단쓰레기 배출, 불법 주정차 등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비대상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현장 설명 및 독려를 통하여 자율정비 • (2차) 불응시 미이행 절차(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합동 강제 정비 추진 • (3차) 재발생 부분 책임담당단체 현장 계도 및 특별정비반 신고 등 사후관리

※ 불법 침지류 제거 및 더러운 외벽·셔터 등 도색 분야 등 일부 사업 자원봉사자 활용

④ 동 주민센터 및 주민협의체 합동 사후관리

- 주민 스스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및 동 주민센터의 매월 1회 이상 합동 순찰을 통한 관리(※필요시 자율협약 체결)
- 재발생 부분 특별정비반 지원요청 및 정비시 도출된 문제점 수시 보완

정비 및 사후관리 실태점검 (감사담당관)

- 특별정비반(해당부서) 현장 참여 및 정비 업무수행 등
- 정비대상 사후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TF팀 (밝은마을 조성 추진단) 명칭 변경

- 『밝은마을 조성 추진단』 → 『쾌적한 안전도시 추진단』

VII 시범동 인센티브 부여 계획

- 대 상 : 시범정비 해당동
- 내 용 : 2015년 동 행정업무 추진실적 평가 특수사업 실적으로 가점부여(자치행정과)
- 평가방법 : 2015년 동 행정업무 추진실적 평가 심의위원회 개최시, 사업추진 적극성 평가

VIII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000,000원
 -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1,500,000원 * 1식 = 1,500,000원
 - 정비용품 등 : 500,000원 * 1식 = 500,000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중장기적 비전제시, 건전재정운용, 기관공통 업무수행 지원,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IX 협조 사항

- 감사담당관 : 정비대상 현황 협조 및 사업추진 점검
- 총 무 과 : 차량지원, 행정조직(TF팀) 명칭 변경
- 자치행정과 : 동 행정업무 추진실적 평가항목(특수사업) 가점부여
- 기획예산과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 복지지원과 :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협조
- 동 주민센터 : 주민협의체 구성, 자진정비 안내문 전달
- 정비관련부서 : 현장 합동점검 및 정비 등

[별첨]

이웃을 배려하는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 안내문(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관련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안전 최우선을 기반으로 한 주민 불편사항 및 도시환경 저해 요인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웃을 배려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 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안전도시 가꾸기 사업은 가로변, 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등 불법주정차, 불법간판, 무단적치물, 무단쓰레기 등을 주민 스스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오니 건물주(점포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 및 자진철거**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리 대 상 >

- 쓰레기 배출시간 외 배출금지, 불법주정차 금지
- 도로를 무단점유한 불법 적치물 : 판매용품(음료 등), 화분 등
-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현수막, 무허가 지주간판 등 불법간판
- 훼손된 천막(어닝) 철거, 더러운 셔터·어닝·출입구캐노피 등 물청소

2015.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